
2027학년도 상지대학교 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Tel. 033) 730-0125
Fax. 033) 730-0128
Address. 2633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우산동)
Homepage. <https://www.sangji.ac.kr/go/index.do>

목 차

I .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1
II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안내	2
III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5
IV . 전형별 세부사항	
<재외국민> 전형	7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전형	10
V . 지원자격 인정기준	11
VI . 서류평가	15
VII . 면접고사	17
VIII . 제출서류	18
IX . 합격자 선발기준	22
X . 지원자 및 합격자 유의사항	23
XI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25
XII . 서식자료 및 기타사항	26

I.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1. 모집인원

모집군	단과대학	모집단위	전형명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다군	한 의과대학	한 의예과	3	1

2. 전형요소 및 전형비율

전형구분	전형요소별 비율		세부사항
재외국민	서류평가 70%	면접고사 30%	7쪽 참고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서류평가 70%	면접고사 30%	10쪽 참고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가. 서류평가 : 각종 증빙서류(교과성적, 수상실적, 교내외활동 등)를 토대로 종합 평가(15쪽 참고)

나. 면접고사 : 인성 및 적성 평가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능 반영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탐구영역을 반영할 때는 2개 과목 평균에서 소수점을 버린 등급으로 반영하며, 직탐은 제외합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다음 기준 중 1개 충족)

① 4등급 이내

② 단, 수학(미적분/기하)을 반영하는 경우 5등급 이내

[②번 기준은 수학(미적분/기하) 응시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계산 시 반영되어야 적용됩니다.
(미반영 시 ①번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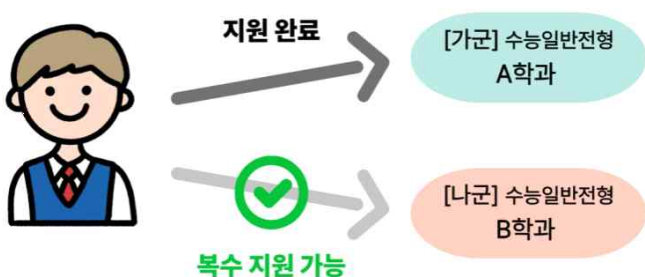
3. 복수 지원 허용범위

가. 모집군별로 1개 전형 및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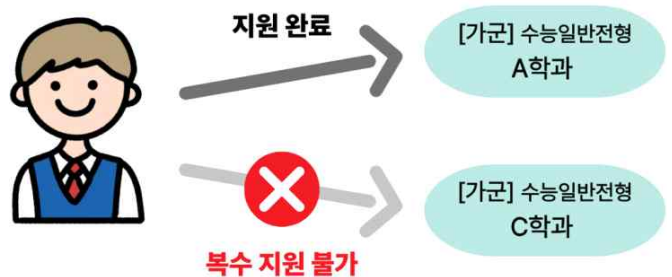
나. 모집군이 다르면 최대 3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가군 수능일반전형의 A학과를 지원한 수험생이 복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지원 가능 예시]



[복수 지원 불가 예시]



II. 원서접수 및 전형 일정 안내

1. 원서접수 주요사항

가. 원서접수 기간 : **2027. 01. 04.(월) 09:00 ~ 01. 07.(목) 22:00**

나.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다. 접수사이트 :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 대행사(유웨이, 진학사)

라. 원서접수 절차

1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 대행사(유웨이, 진학사)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3 상지대학교 선택	원서접수 대학에서 상지대학교를 선택하세요.
4 입학원서 작성	· 수험생 유의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입력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연락처는 항상 연락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 오탈자 또는 변경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5 원서 입력사항 최종 확인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료 결제 후 전형유형, 모집단위를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전형료 결제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결제 바랍니다.
7 원서접수 완료 확인	수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험표를 확인하세요.
8 수험표 출력	수험표 출력 후 본인이 보관하며 면접고사에 지참하세요.
9 추가서류 제출	· 지원자는 추가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봉투에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한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하여 제출해 주세요. · 주소 : (우) 2633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본관 3층 입학팀 · 제출 기한: 2027. 01. 08.(금) 16:00까지 대학 도착 ※ 단, 우편물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합니다.

※ 진행과정에서 문의가 있는 경우 원서접수 대행사로 문의 바랍니다.

※ 원서접수 등 유의사항은 23쪽 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 전형 일정

구분		일시	세부사항
원서접수		2027.01.04.(월) 09:00 ~ 01.07.(목) 22:00	재외국민전형 한의예과는 다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2027.01.08.(금) 16:00까지 제출 (우편물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고사		① 학과 선택 동기 등 입력 : 2027.01.19.(화) ~ 01.20.(수) ② 면접문항 공지 및 조회 : ①번 입력 후 조회 가능(미입력 시 조회 불가) ③ 면접고사 : 2027.01.30.(토)	① 면접고사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② 고사 당일 다음의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수험표 1부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부 - 기타 고사에 필요한 준비물 ③ 학과 선택 동기 등 입력을 완료해야 면접문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미입력하는 경우 면접고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합격자	발표	2027.02.03.(수) 오후 중	▶ 합격 여부는 입학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통보 또는 유선 확인은 불가합니다.) ▶ 합격자 발표 시간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기 발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2027.02.10.(수) 09:00 ~ 02.12.(금) 16:00	▶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후 등록금 납부고지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며, 기한 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는 개별 발송하지 않습니다.)
충원합격자	발표	2027.02.12.(금) 저녁 ~ 02.17.(수) 18:00	▶ 세부 일정(차수별 발표 및 등록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사항 ① 충원합격자는 개별 통지한 기한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② 개별 통지한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순번 예비자에게 합격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등록기한을 잘못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2027.02.18.(목) 16:00 마감 (우측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위의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생년월일 및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핸드폰 촬영본, 사본 등은 불가)

※ 단,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면접고사 본인 확인 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실물 신분증 지참 권장

3. 전형료 안내

○ 전형유형별 전형료

전형 및 모집단위		일반관리비	서류평가	면접고사	원서접수 수수료	최종 결제금액
전체 전형	한의학예과	50,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원	205,000원

○ 전형료 환불 안내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 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반환 사유	반환금액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가 포함된 전형에 지원한 인원이 지원자격 미달 및 서류 미제출로 대학별고사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단순 결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대학별고사에 해당하는 금액

I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 합격자 발표, 합격증, 등록 안내, 등록금 납부고지서, 학생경비 납부고지서 등은 개별통보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직접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래 일정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합격자 발표 일정

구분	발표 일정	합격자 발표 방법	비고
최초합격자	2027.02.03.(수) 오후	입학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충원합격자	2027.02.12.(금) 저녁 ~ 02.17.(수) 18:00	유선 통보 및 입학 홈페이지	추후 세부일정 및 발표 방법 등이 포함된 충원계획 공지 예정입니다.

- 모든 지원자는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는 합격자 명단(예비자 등 포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비자는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동안 항상 전화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학의 노력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원서접수 시 등록한 번호에 3회 이상 연락 불가자 등 포함)은 등록포기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수험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및 방법

구분	등록 기간	등록 방법	비고
최초합격자	2027.02.10.(수) 09:00 ~ 02.12.(금) 16:00까지	①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충원합격자	2027.02.18.(목) 16:00 마감 (합격자별 등록기한은 합격 발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② 등록금 고지서(학생경비 고지서 포함) 확인 ③ 금액 확인 후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	· 개별 통지한 기한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등록기한을 잘못 인지하 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일정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전액 면제 장학생(등록금액이 '0원' 인 합격자)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등록 처리를 진행해야 등록으로 처리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입학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학생경비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등록금과 함께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7학년도 기준 등록금은 미정이며, 필요한 경우 다음의 2026학년도 기준 등록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 홈페이지 상단의 [대학생활] → [등록안내] → [등록금 안내]

3. 등록 포기 및 환불

가. 재외국민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이 타 대학에 총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예비자에게 총원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즉시 상지대학교에 등록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나. 등록 취소 신청 기간

취소 신청 기간	등록 취소 신청방법	비고
2027.02.12.(금) 저녁 ~ 02.17.(수) 18:00	입학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해당 기간 이후 신청 시 이중 등록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일 기준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예정

※ 2027.02.17.(수) 18:00 이후에는 입학팀에서 별도 안내한 기간 중에만 취소 가능

다. 등록금 환불 금액

- 2027.02.17.(수) 18:00 이전 포기자 : 납입 등록금 전액 환불

- 2027.02.17.(수) 18:00 이후 포기자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

Ⅳ. 전형별 세부사항

<재외국민> 전형

1. 자격요건

가.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지원자격

구분	내용
재외국민 근무 분류	해외근무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해외 파견근무자,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 포함), 자영업자, 선교사
국외재학기간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재학한 기간
국외근무기간	재직증명서상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상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단순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체류한 기간은 해당되지 않음)
국외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 체류일수를 합한 기간 (출국일 포함, 입국일 제외)

다.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자격요건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지원자		보호자 (부 또는 모)		보호자의 배우자 (부 또는 모)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3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재학 기간의 3/4	3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재학 기간의 2/3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재학 기간의 2/3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1년 2학기제 기준이며 1년은 365일로 통산 3년(1,095일) 기준 충족 필수

라. 재외국민 근무 분류별 세부 지원자격 (분류별 내용에 모두 해당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1)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국내, 국외를 포함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
- 재외국민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나항 참고)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국내, 국외를 포함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
- 재외국민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나항 참고)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 ※ 외국정부의 범위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 국제기구의 범위 : 정부 간의 국제조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3)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국내, 국외를 포함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
- 재외국민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나항 참고)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4)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국내, 국외를 포함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
- 재외국민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나항 참고)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 되지 않은 곳에 단순 파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국내, 국외를 포함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
- 재외국민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나항 참고)
-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6) 자영업자의 자녀

- 국내, 국외를 포함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
- 재외국민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나항 참고)
-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의 자녀

7) 선교사의 자녀

- 국내, 국외를 포함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
- 재외국민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나항 참고)
-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로서 해당 법인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선교사의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복수국적법 제11조의2 의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형방법

전형구분	전형요소별 비율	
재외국민	서류평가 70%	면접고사 3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가. 서류평가 : 각종 증빙서류를 토대로 종합 평가 (세부사항 15쪽 참고)

나. 면접고사 : 인성 및 적성 평가 (세부사항 17쪽 참고)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능 반영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탐구영역을 반영할 때는 2개 과목 평균에서 소수점을 버린 등급으로 반영하며, 직탐은 제외합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다음 기준 중 1개 충족)

① 4등급 이내

② 단, 수학(미적분/기하)을 반영하는 경우 5등급 이내

[②번 기준은 수학(미적분/기하) 응시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계산 시 반영되어야 적용됩니다.
(미반영 시 ①번 기준 적용)]

3. <재외국민>전형 제출 서류 : 18쪽 참고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

1. 자격요건

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복수국적법 제11조의2 의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형방법

전형구분	전형요소별 비율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서류평가 70%	면접고사 3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가. 서류평가 : 각종 증빙서류를 토대로 종합 평가 (세부사항 15쪽 참고)

나. 면접고사 : 인성 및 적성 평가 (세부사항 17쪽 참고)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능 반영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탐구영역을 반영할 때는 2개 과목 평균에서 소수점을 버린 등급으로 반영하며, 직탐은 제외합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다음 기준 중 1개 충족)
- ① **4등급 이내**
- ② 단, 수학(미적분/기하)을 반영하는 경우 **5등급 이내**
 [②번 기준은 수학(미적분/기하) 응시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계산 시 반영되어야 적용됩니다.
 (미반영 시 ①번 기준 적용)]

3.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전형 제출 서류 : 19쪽 참고

V. 지원자격 인정기준

1. 공통 사항

- 가.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나.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복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우리나라	○	○	○	○	○	○	○	○	○	○	○	○
외국학교	○	○	○	○	○	○	○	○	○	○	○	○
재학기간	○	○	○	○	○	○	○	○	○	○	○	○

※ 학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중복 관련 지원자격 불충족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관련 지원자격 **불충족** 사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우리나라	○	○	○	○	○	○	○	○	○	○	○	○
외국학교	○	○	○	○	○	○	○	○	○	○	○	○
재학기간	○	○	○	○	○	○	○	○	○	○	○	○

※ 학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함

라. 학제 인정기준 : 국외학교 과정은 우리나라 학제(12학년) 상의 초·중·고·대학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과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6년)	1~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3년)	7~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3년)	10~12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	Year 11 ~ Year 13 과정

마. 학기 인정기준 : 해당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2.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 국외 재학기간

- ▶ 인정기간은 보호자의 외국 근무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예시 : 고교 1학년 2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는 경우 2학년 2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1개 학년으로 인정)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 1개 학년이 3term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term을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term을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 (3개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3term제의 1term 또는 3term만 이수하거나, N학년의 3term과 N+1학년의 1term을 이수하는 등 본교의 1개 학기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1개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quarter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3~4 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 (4개 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4quarter제의 1개 quarter만 이수하거나, N학년의 4quarter와 N+1학년의 1quarter를 이수하는 등 본교의 1개 학기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1개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외국학교에서 단순 어학 수업만 이수한 학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LS 과정, 어학연수 등)

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는 2/3 이상을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자 및 배우자는 2/3 이상을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며,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마.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내용
국외근무기간	재직증명서상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상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단순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체류한 기간은 해당되지 않음)
국외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 체류일수를 합한 기간 (출국일 포함, 입국일 제외)

※ 근무 증빙서류(세금납부 증빙서류 등)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전형 지원자격 인정기준

- 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 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나. 국외 동일학년제에서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다.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라.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마.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외국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4. 외국학교 인정 기준

- 가.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보호자(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 한하며, 보호자(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체제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서류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가.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부모의 근무국에서 자녀의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거주 및 근무(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이상)해야 합니다.
- 나.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7년 2월 말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합니다.
- 다.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마.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전형 지원자는 부모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여부는 본교 서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VI. 서류평가

1. 제출 서류 목록

순번	제출 서류	내용
1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순서대로 작성(해당자만 제출)
2	성적증명서(10~12학년 기준)	○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국내 고교(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포함) 재학 또는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3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작성 및 제출 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국문)을 받은 후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관련사항

가. 증빙서류 예시

종류	증빙 서류
해당국 대입시험 관련 성적·학력증명서	SAT, IB, AP, A-Level
수상경력	수상경력 증명서
어학능력 입증서류	TOEIC, TOEFL, TEPS, HSK, JLPT 등 인정(취득)증명서
자격증 및 봉사활동 등 기타활동	자격증,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입증 서류

나. 제출 서류 규격

- 1) 항목 : 지원자가 판단하는 우선 순위가 높은 10개 항목
- 2) 증빙서류 페이지 기준 : A4 기준 총 20페이지 이내

다. 서류 제출 방법

- 1)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1장씩 정리하여 총 20페이지 이내로 구성합니다.
- 2) 2장 이상으로 구성된 1건의 서류인 경우, 총 20페이지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페이지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A3용지에서 A4로 축소 등 A4 사이즈로의 단순 축소·확대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A4 1장에 여러 장의 서류를 축소 복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번역공증,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등으로 인해 서류가 책자나 철 형태로 묶음 처리된 경우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로 제출할 페이지를 1장씩 제출합니다.

라. 제출 시 유의사항

- 1) 지원자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10학년 ~ 12학년의 3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1학년제 학교 졸업(예정)자 : 9학년 ~ 11학년
 - 13학년제 학교 졸업(예정)자 : 11학년 ~ 13학년

- 2) 증빙서류의 취득일이 지원자 본인의 고교 과정 재학 기간 기준 외의 일자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는 반드시 목록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발행기관이 없는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 모든 서류는 A4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별도 양식은 없으며, A4 기준으로 확대/축소를 진행할 경우 서류의 판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6) 서류 편집(별도 설명 기재 등)은 불가합니다.
- 7) 추천서는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8) 공식적인 문서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하며, 확인을 위해 서류평가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합격 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서류평가 안내

- 가. 평가방법 : 증빙서류를 토대로 교과성적, 어학능력, 수상실적, 교내·외활동 등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나. 서류평가는 평가위원 2인의 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평균 점수가 21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완전 불합격 처리
- 다. 서류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별 평가 내용	최고점
진로 역량	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고교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②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300점
학업 역량	①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② 학업태도 및 탐구활동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200점
공동체 역량	① 성실성과 규칙 준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② 협업과 소통 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200점

Ⅶ. 면접고사

일정	▪ 학과 선택 동기 등 입력 : 2027.01.19.(화) ~ 01.20.(수) ▪ 면접문항 공개 : 학과 선택 동기 등 입력 이후부터 확인 가능(미입력 시 조회 불가) ▪ 면접고사 : 2027.01.30.(토) ※ 학과 선택 동기 등 입력 및 면접고사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장소는 추후 입학 홈페이지 공지
면접고사 평정표 항목 작성 방법	▪ 지원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학과 선택 동기 및 학업계획’ 입력 후 면접고사 문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미입력 시 조회 불가하며, 면접고사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학과 선택 동기 및 학업계획’은 반드시 300자 이상 입력해야 하며, 입력한 내용은 면접 시 평정 점수에 반영됩니다. ▪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의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는 일체 작성하거나 표시하지 않습니다.
면접고사 방법	▪ 면접관 2인이 1개 조로 수험생 1인 면접을 실시합니다. ▪ 사전 공개된 면접 문항 중 1개 문항을 질문합니다. ▪ 면접관은 면접 문항과 수험생이 작성한 ‘학과 선택 동기 및 학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며 면접고사를 진행합니다. ▪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면접고사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하며, 면접 시 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복 착용 및 지원자의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를 언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수험생의 동의를 받아 평가 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면접고사 점수 산출방법	▪ 면접관이 평정한 점수를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 이후 반영합니다.(소수점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면접관 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조별 평균의 차이를 보정 후 산출합니다.
유의사항	▪ 고사 당일 수험표(사진 부착)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미지참 시 면접고사 응시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핸드폰 촬영본, 사본 등은 불가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본인 확인 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실물 신분증 지참 권장) ▪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 대기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 수험생은 개인별로 입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면접고사 일정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개별통보 미진행) ▪ 면접고사 결시자, 부정행위자 및 고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입학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Ⅷ. 제출서류

1. <재외국민>전형

가. 공통 제출서류 (모든 지원자 해당사항)

순번	서류 목록	비고
1	자격서류 심사 신청서	
2	초등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3	중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4	고등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5	중·고등학교 학사일정표	▶ 중·고교 3개 학년 재학을 산정하기 위하여,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 반드시 명시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으로 대체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6	국외 중·고등학교 학적조회 동의서	▶ 입학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후 작성
7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기준 1부 ▶ 부모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불가
8	가족관계 관련 별도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9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 모, 지원자 기준 각 1부 (총 3부)
10	여권사본	▶ 부, 모, 지원자 기준 각 1부 (총 3부) ▶ 국외 재학기간 중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 모, 지원자 기준 각 1부 (총 3부)
12	근무자 재직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 부 또는 모 1부 ▶ 해외근무기간 명시
13	사실증명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입학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후 작성 ▶ 부, 모, 지원자 기준 각 1부 (총 3부)
14	제3국 수학인정 신청서	▶ 해당자만 제출
15	사유서	▶ 해당자만 제출
16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 해당자만 제출
17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 해당자만 각 1부씩 제출

나.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세부 지원자격	서류명	비고
해외근무 공무원	공무원 증빙 서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 사실 증빙 서류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해외 파견 근무자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점(사무소)설치신고서 사본	▶ 신고(허가)일이 보호자의 근무 시작일 이전이어야 함

세부 지원자격	서류명	비고
현지법인 근무자 (취업자 포함)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해외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학생의 재외국민 자격기간 이상의 서류
해외 자영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해외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학생의 재외국민 자격기간 이상의 서류
선교사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고유번호증 불가 ▶ 종교단체 원본대조필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	▶ 종교단체 명의 발급, 법인 대표자 날인 ▶ 국가 및 기간 명시

다. 가족관계 관련 별도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① 2007년 이전 사망(실종) 시 제적등본 1부 ② 2008년 이후 사망(실종) 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부모가 이혼한 경우	① 지원자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② 친권 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 본인이 입양자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2.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전형 (모든 지원자 해당사항)

순번	서류 목록	비고
1	자격서류 심사 신청서	
2	초등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3	중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4	고등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수
5	국외 중·고등학교 학적조회 동의서	▶ 입학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후 작성
6	출입국사실증명서	▶ 지원자 기준 1부
7	여권사본	▶ 지원자 기준 1부 ▶ 국외 재학기간 중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
8	사실증명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입학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후 작성 ▶ 지원자 기준 1부
9	사유서	▶ 해당자만 제출
10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 해당자만 제출
11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 해당자만 각 1부씩 제출

3. 서류 제출 기한 : 2027. 01. 08.(금) 16:00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물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4. 공통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2026. 10. 07.(수)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 외국의 발급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 재직, 체류 중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나. 해외 발급 서류는 공증번역문(국문) 및 원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 해외에서 발급하는 다음의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초·중·고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및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의 재학 관련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발급 면제

2) 보호자의 재직 관련 증명서

3) 보호자의 세금 납부 관련 증명서

4) 보호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라. 국내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해외 한국학교의 경우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국외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 전출일자 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연/월/일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는 재학한 모든 학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학적조회 동의서는 재학한 외국 소재 학교의 수만큼 작성해야 하며 [학교정보-이메일]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국외 거주 또는 재학했던 국가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 제출서류상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서류별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 또는 한국의 교육청에 준하는 정부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타. 체류 등 모든 서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 보호자의 자격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016.02.01.~2020.02.01. 해외파견근무 / 2020.02.02.~ 2021.03.02. 현지법인근무
위의 경우 2020.02.01.까지는 해외파견근무자의 자격 서류를, 2020.02.02.부터는 현지법인근무자의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체제(공산권 국가 등)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서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한 경우 본교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심사 과정에서 외국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지원자격이 미달된 경우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불합격)됩니다.

5. <재외국민>전형 세부 지원자격별 유의사항

가.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 재직증명서 : [본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파견국가 및 파견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설치 신고서 사본 : 근무 시작일 이전 신고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본사 또는 은행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와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지점(사무소)설치 신고서상의 회사명이 다른 경우 동일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해당국 기관 발급(지사 소속인 경우 해당국 지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 또는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현지 법인등록증 : 해당국에서 발급받은 법인등록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법인등록일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현지법인 대표일 경우 ‘법인등록증’에는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폐업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현지법인 대표 및 근무자(취업자) : 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는 연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함
 - ※ 반드시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다. 자영업자의 자녀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일은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보호자의 이름이 대표 또는 공동투자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정부 기관의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선교사의 자녀

- ▶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록증) 이외 서류는 인정불가(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해당 종교단체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합니다.
- ▶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 : 법인등록증에 명시된 종교단체의 명의로 발급받고, 법인 대표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IX. 합격자 선발기준

1. 합격자 선발기준 기본 원칙

- 가. 각 전형요소별 점수를 일괄 합산하여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사정에서 제외 또는 상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격 미달자
 - 입학원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자 / 서류를 미제출(미비)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자
 - 면접고사 결시자, 부정행위자 및 고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대학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입학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
- 라. 지원방법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 허위 기재, 부정행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및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입학(합격)을 취소하며, 이에 따른 입학(합격) 취소자에게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2.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동점자 처리기준
한의예과	① - 서류평가 반영 성적 총점 ② - ①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3. 성적산출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든 단계 적용)
- 4.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상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X. 지원자 및 합격자 유의사항

- ※ 모든 수험생은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합격자 발표는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의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이 합격 여부를 조회한 이후 합격 여부에 따라 안내문, 합격증 등을 출력해야 합니다.)

1. 원서접수 및 등록에 관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 1)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
- 2) 원서접수 시 모집군별 1개의 모집단위 및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가~다군 중복지원 가능)
 - 정시모집에서는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 군별로 1회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전형 한의예과는 다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3) 입학원서의 모든 입력사항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기재사항(주소, 전화번호 등 일체)을 잘못 적어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 상지대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전형기간 중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지대학교 입학팀에 통보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4) 접수된 서류는 반환 및 수정이 불가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상지대학교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는 원서접수와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복수지원 허용범위

- 1) 정시모집 지원 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2)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3)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에 따른 추가 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 4) 입학전형이 종료된 이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합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

- 1)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1개의 대학에 등록한 이후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한 경우
 - 충원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등록 대학을 즉시 등록 포기한 후 충원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 충원합격한 대학을 포기할 경우: 충원합격한 대학에 즉시 등록 포기 의사(신청)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에 관한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우리 대학에서 지정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다. 서류 제출기한: 2027.01.08.(금) 16:00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우편 제출 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주소: (우) 2633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본관 3층 입학팀
- 라. 상지대학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면접고사에 관한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될 안내사항(고사장, 고사일시 등)을 숙지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에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 나. 수험생은 고사 당일 사진이 부착된 수험표와 공적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고사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다. 대학별고사에 결시하는 경우 완전 불합격 처리되며, 입학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4. 합격자[최초합격자, 충원합격자] 유의사항

- 가. 모든 지원자는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나. 합격자[최초합격자, 충원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안내된 절차를 통해서 등록(등록금 납부)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포기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최종 등록금 납부 시 전액장학생으로 등록금이 0원인 경우에도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조회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최종 등록처리 됩니다.(등록금 납부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복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
- 마. 다음의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 지원자격 미달자(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포함) 및 서류 미제출자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

5. 수험생은 대입전형 운영 및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자 본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상지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지대학교 입학전형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Ⅺ.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상지대학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1. 상지대학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전형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4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전형구분, 모집단위(지망학과), 환불계좌정보 등	10년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임기준 가이드 의거)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학사, 장학,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상지대학교 (대학본부, 학과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교정보, 전형정보, 환불계좌정보 등	학적부 생성, 장학생 선발, 등록관리, 안내문자 발송(입학식, 신입생OT 등), 생활관생 선발, 통계 등
제3자 제공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검정고시 합격정보, 검정고시 과목성적정보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원 내용 등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등
	원서접수 대행사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교정보, 전형정보, 환불계좌정보 등	대입 원서접수 대행 및 통합충원관리 시스템 운용 등
	출신고교	이름, 합격 학과 등	진학자료 작성

XII. 서식자료 및 기타사항

1. 서식자료 안내

구분	서식명	게시장소
지원자 전원	▶ 자격서류 심사 신청서	①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② 원서접수 완료 조회 페이지
	▶ 국외 중·고교 학적 조회 동의서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해당자	▶ 사유서	① 상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2.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안내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교육기관입니다.

[인증기간: 2024.01.01.~ 2027.12.31.]